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03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구합2116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아이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 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변 론 종 결	2014. 8. 27.
판 결 선 고	2014. 9. 19.

주 문

1. 피고가 2014.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3,137,080원 중 가산세 6,537,080원, 지방교육세 2,147,700원 중 가산세 487,700원, 농어촌특별세 990,850원 중 가산세 160,8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3,137,080원, 지방교육세 2,147,700원, 농어촌특별세 990,850원 합계 26,275,63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03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8.「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서, 2011. 3. 29. 자산보유자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을 포함한 유동화자산을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A)에 직접 참가하여 2012. 2. 21. 위 부동산의 매수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2012. 3. 27. 매각대금을 모두 완납하였다.

다. 원고는 2012. 4. 1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83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후 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신법'이라 하고,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구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100분의 50의 세액을 감면하여 계산한 취득세 16,600,000원, 지방교육세 1,660,000원, 농어촌특별세 830,000원 합계 19,09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4. 3. 6.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2) 기재와 같이 취득세 23,137,080원, 지방교육세 2,147,700원, 농어촌특별세 990,850원 합계 26,275,63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03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해석에 따른 취득세 감면 주장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부동산을 직접 승계취득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자산보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채권을 양수하여 채권회수 목적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담보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는 경우(이하 '경매취득의 경우'라고 한다)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자산유동화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는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담보부채권을 양수하여 채권 회수 목적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담보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는 경우가 위 사항에 해당된다. 그렇지 않으면 위 조항 부분은 아무런 의미 없는 문구가 되어 버린다.

②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 부분은 자산보유자에서 비롯되어 취득하게 된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이고, 취득 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반드시 자산보유자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아니한다.

③ 정부제출안에 대한 입법예고의 주요내용에서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법문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규정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어떤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였고, 정부제출안의 비용추계서에서도 위 규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의 폐지 또는 축소를 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03

제로 한 세수증가를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고, 위 조항은 국회에서 전혀 논의되지도 아니하였다.

④ 유동화전문회사가 경매취득하는 경우와 직접 자산보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 후자는 현실적으로 거의 이용되고 있지 않고, 유동화전문회사의 경매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중도 폐지는 은행이 보유한 부실채권 및 유동화자산의 가치를 떨어뜨려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발생시키게 된다.

⑤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이하 '연합자산관리'라 한다)는 2011. 5. 2.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무과에 신법 시행 후 경매취득의 경우 취득세가 감면되는지에 관하여 질의하여 같은 달 4. 감면된다는 취지로 답변을 받았고, 경매취득과 관련하여 유비제일차유동화 유한회사는 2012. 9. 27. 양산시장으로부터, 유앤더블유유동화전문회사는 2012. 10. 15., 유아이제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2. 11. 19. 각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유앤더블유유동화 전문회사는 2012. 12. 1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각 취득세감면결정통지를 받았으며, 김포시장, 군포시장 등도 취득세 50%가 감면됨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2012. 8.경 발행한 자산유동화실무안내에도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50%가 감면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

연합자산관리가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무과로부터 신법 시행 후에도 경매취득의 경우 취득세가 감면된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점, 유비제일차유동화 유한회사는 경매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양산시장으로부터 지방세감면결정통지를 받은 점, 과세관청은 2012년 말경까지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03

취득세가 감면됨을 인정하였고, 정부도 이와 같은 과세행정을 그대로 용인한 점, 정부는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입법과정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의 축소를 알리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러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위와 같이 믿은 데에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3) 비과세 관행 성립 주장

과세관청은 2012년 말경까지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가 감면됨을 인정하였고, 정부도 이와 같은 과세행정을 그대로 용인한 점, 연합자산관리가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무과로부터 신법 시행 후 경매취득의 경우에도 취득세가 감면된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점, 유비제일차유동화 유한회사는 경매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양산시장으로부터 지방세감면결정통지를 받았고, 다른 유동화 전문회사들도 경매취득의 경우 취득세 감면 통지를 받은 점,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는 1998. 9. 16. 법률 제5561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114조 제1항 제10호와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취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위법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는 가산세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가산세의 종류 및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납세고지서의 부과세액에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가산세로 구성된 것인지, 여러 종류의 가산세로 구성되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03

있다면 각 가산세가 각 얼마씩 구성된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나)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는 1998. 9. 16. 법률 제5561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114조 제1항 제10호와 일치하는 점, 과세관청은 2012년 말경까지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가 감면됨을 인정하였고, 정부도 이와 같은 과세행정을 그대로 용인한 점,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입법과정을 감안하면 정부는 위 규정을 국민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가하는 규정으로 해석하지 않았던 점, 연합자산관리가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무과로부터 신법 시행 후에도 경매취득의 경우 취득세가 감면된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점, 유비제일차유동화 유한회사는 경매취득 부동산에 관하여 양산시장으로부터 지방세감면결정통지를 받았고, 다른 유동화 전문회사들도 경매취득의 경우 취득세 등 감면통지를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인 원고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03

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구법 제120조 제1항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3호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 12. 31.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하여만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바, 구법에서 감면대상으로 정하고 있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부동산' 부분이 신법에서 제외되었음은 그 문언상 명백한 점, ② 위와 같이 신법에서 취득세 등 감면 대상을 축소한 것은 과세의 공평과 세수의 확보를 위한 공공의 목적에서 비롯된 점, ③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라는 문구는 등록된 자산유동화계획과 관계없는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문구는 유동화전문회사가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직접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그 문언상 자연스럽고, 만약 원고의 주장처럼 위 문구를 '자산보유자에서 비롯되어 취득하게 된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면, '자산보유자에서 비롯된다'는 표현 자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03

가 불명확하여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게 되는 점, ⑤ 신법의 입법과정에서 유동화전문회사의 취득세 감면 혜택의 축소에 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거나 논의되지 않는 등 그 밖에 원고가 드는 사정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난 해석을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가 경매취득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고,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593 판결 등 참조).

갑 제2, 3, 5 내지 11, 13,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경매취득의 경우 유동화전문회사에게 종전 부여되어 있던 취득세 감면 혜택의 폐지에 관하여 신법의 입법과 관련된 자료에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 원고의 주요주주로서 자산관리자 겸 업무수탁자인 연합자산관리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 신법에 명시된 사항이 없어 감면대상이 안된다'는 통지를 받은 후, 2011. 4. 29.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무과에 '신법 시행 후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채권에 기하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03

근저당권을 관리·운용하는 과정에서 채권자의 자격으로 경매에 응찰하여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취득세가 감면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를 한 사실, 위 질의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무과는 2011. 5.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갑 제13호증에는 제10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에서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50% 감면되나 저당권 이전 등에 따른 등록면허세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사실, 유동화전문회사가 대출채권 회수를 위하여 경매절차에서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사안에서, 유비제일차유동화전문회사는 2012. 9. 27. 양산시장으로부터, 유앤더블유유동화전문회사는 2012. 10. 14., 유아이제사차유동화전문회사는 2012. 11. 19. 각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유앤더블유유동화전문회사는 2012. 12. 1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각 취득세 등의 감면이 이루어졌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정부가 신법의 입법과정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의 폐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정부가 종전과 같이 취득세를 감면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위 질의는 원고가 아닌 연합자산관리가 이 사건 처분의 권한이 있는 피고가 아닌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무과에 한 것으로서 위 회신 내용 및 형식으로 보아 관계 법령의 일반적인 해석에 불과한 점, ③ 연합자산관리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더라도 취득세 감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른 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후에 재차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무과에 질의를 한 것이고, 그 회신 내용은 매도자가 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03

산보유자 등인지에 관계없이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오히려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무과는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을 언급하며 '자산보유자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고 답변한 점, ④ 위 각 취득세 감면통지는 원고가 아닌 다른 유동화전문회사와 그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가 위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셋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484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2. 4. 1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00분의 50의 세액을 감면하여 계산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 피고는 2014. 3. 6.에 이르러서야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며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않았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03

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비과세 관행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넷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절차적 위법 주장에 관하여

(1)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납세고지에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더라도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이미 모두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의 하자는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은 법령 등에 의하여 납세고지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고지서와 일체를 이룰 수 있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물론,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두2694 판결 등 참조), 또한 납세고지는 서면(납세고지서)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사전에 납세의무자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03

게 과세대상과 구체적 세액 산출 근거를 구두로 예고해 준 바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된다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누3409 판결 등 참조).

(2)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3. 6.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그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를 구분하지 않고 각 세목별 합계액만을 기재하였을 뿐이고, 피고가 부과한 각 가산세의 산출근거나 종류, 액수 등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나아가 피고가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이미 모두 기재되어 있는 과세예고통지서 등 납세고지서와 일체를 이룰 수 있는 서류를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미리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은 것이 명백하여 가산세 부분의 납세고지상의 절차적 하자가 보완·치유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가산세 납세고지의 하자가 보완·치유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므로, 별지 목록(2) '가산세 합계'란 기재의 각 금원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실체적 위법 주장에 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03

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구법에서 감면 대상으로 정하고 있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부동산' 부분이 신법에서 제외되었음이 그 문언상 명백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신법이 적용되어 취득세의 50%가 감면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종전과 마찬가지로 취득세를 감면한다는 내용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신법 시행 당시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에 대하여 구법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리라고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여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원고는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무과의 질의회신을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회신의 내용은 신법에서 '자산보유자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므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된다'는 것으로서 이는 법령의 나열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구법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단순히 법령의 부지·착오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03

재판장 판사 권순형

판사 문중흠

판사 김정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03

목록(1)

1. 대구 달성군 논공읍 상리 764-3 공장용지 3,388㎡

2. 위 지상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2층 공장

 1층 공장 480.8㎡

 2층 공장(창고) 420.05㎡

 2층 공장(사무실) 45.5㎡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03

목록(2)

(단위: 원)

구분	본세	가산세			합계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합계	
취득세	16,600,000	3,320,000	3,217,080	6,537,080	23,137,080
지방교육세	1,660,000	166,000	321,700	487,700	2,147,700
농어촌특별세	830,000		160,850	160,850	990,850
합계	19,090,000	3,486,000	3,699,630	7,185,630	26,275,63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03

관계법령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유동화전문회사"라 함은 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자산유동화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제3조(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①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 및 신탁업자(이하 "유동화전문회사등"이라 한다)는 자산유동화에 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자산의 범위, 유동화증권의 종류, 유동화자산의 관리방법등 자산유동화에 관한 계획(이하 "자산유동화계획"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자산유동화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03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민사집행법

제135조(소유권의 취득시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면제(제13호 및 제28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나.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다.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제12호 및 제2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2. 유동화전문회사가 제119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 구 조세특례제한법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된 후 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등록면허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03

가.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나.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제9호 및 제17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부칙 <법률 제10406호, 2010.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4조의2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8조의2 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73조(제1항 제14호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 제88조의4 제13항, 제104조의16 제4항 제2호 및 제129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⑥ 이 법 중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9. 16. 법률 제5561호로 개정된 것)
제114조 (취득세의 면제등)
① 다음 각 호의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7호의 경우 제40조의7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0.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 <끝>